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14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 박수현・양문석・최민희

김영배 · 조계원 · 위성곤

김재원 · 서삼석 · 이정문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제 1조 등).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를 "계승·활용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규제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유산에 관한 규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목적에 비례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문화유산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문화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규제 완화 기본계획(이하 "규제완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제완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 규제의 현황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
 - 2. 규제 완화 대상 문화유산의 단계별 추진전략
 - 3. 그 밖에 문화유산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
 - ③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규제완화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이행실적를 매년 평가하고,그 결과를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국회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과 결과를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관련 규제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규제완화 기본 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의5(규제 완화 미이행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유산의 규제 완화가 불가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규제로 인하여 현저한 권리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 완화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하거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의 기준,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제1조(목적)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u>계승·활용</u>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
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	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u>에 기여함을</u> 목적으로 한다.	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규제의 합리성과 예
	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을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신 설></u>	② 문화유산에 관한 규제는 문
	화유산의 보존 목적에 비례하
	고,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
	로 운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
	화유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권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장의2 문화유산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문화유산 규제 완화 기 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 장은 문화유산 관련 규제의 합 리적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규제 완화 기본계획(이하 "규 제완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규제완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문화유산 규제의 현황 및 규

 제 완화의 필요성
 - 2. 규제 완화 대상 문화유산의 단계별 추진전략
 - 3. 그 밖에 문화유산 규제 완화 를 위한 사항
 - ③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규제완화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는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이행실적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회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의 2제6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4(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관련
규제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규제완화 기본계획 및 규제완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5(규제 완화 미이행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9조의 의2제1항에 따른 규제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유산의규제 완화가 불가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규제로 인하여 현저한 권리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 완화 미이행으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보상하거나 지원대책을 마련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 원의 기준,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